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 계약개요:**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계약
- 총 금액:** 일금 7,700,000 원 (₩7,700,000원 / VAT포함)
- 계약 금액:** 일금 3,850,000 원 (₩3,850,000원 / VAT포함)
- 계약기간:** 본 계약서의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입금 후 다음날로부터 6주 간으로 한다
- 계약내용:**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반응형 홈페이지의 제작

홈페이지 구조	별첨 2의 프로젝트 정의서 기준 제작
무상 하자보수	제작 완료 후 당사 호스팅 이용기간 내
모바일 홈페이지	해당 없음

위의 계약에 대하여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홈페이지 제작 용역을 제공할 디앤디와 별첨 계약조건을 내용으로 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고 쌍방 기명 날인한 동일 원본 2부를 그 증거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별첨: 1. 계약서
2. 프로젝트 정의서

홈페이지 제작 발주자 (이하 갑)

상호: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무교동, 더 익스체인지 서울)
대표: 박현이 (인)

홈페이지 제작 수주자 (이하 을)

상호: 디앤디
주소: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9 신한 이노플렉스 304-16호
대표: 김현희 (인)

계약체결일: 2020년 07월 07일

[별첨1]

계 약 조 건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이하 "갑"이라 함)와 디앤디(이하 "을"이라 함)는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홈페이지 제작을 위하여 홈페이지 제작 전문회사인 "을"에게 위탁한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조건 및 별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용역"이라 함은 본문 계약내용의 도메인에 해당하는 홈페이지 제작을 위하여 갑이 을에게 요청한 작업 및 그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를 총칭한다.
- "산출물"이라 함은 약정기간 내에 본 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게 제공한 용역의 결과물을 말한다.
- "홈페이지 제작 완료"라 함은 산출물의 인터넷 서비스 시작을 위한 도메인 연결 및 웹호스팅 셋팅 전을 말 한다.
- "홈페이지 오픈"라 함은 "갑"이 요청한 도메인에 대한 산출물의 온라인 게재 및 웹호스팅 셋팅이 완료된 상태를 말한다.
- "프로젝트정의서"라 함은 "갑"과 "을"이 홈페이지 제작 개발범위를 정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3조 (계약기간)

- 제작 착수일은 계약금이 입금된 다음날(익일)부터 발효되며 입금 일에 따라 전체 일정을 재조정한다. (단, 국경일, 공휴일은 제외)
- "갑"의 프로젝트정의서 검수가 늦어지거나 콘텐츠 자료 제공 지연 시 전체 일정을 재조정한다. ("갑"은 프로젝트정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 "을"에게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 "을"이 제공한 프로젝트정의 서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시안 확정에 따라 전체 일정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재조정 한다.
- 기타 사유에 의해 제작 기한까지 본 건 용역이 지연될 경우 "갑" 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 할 수 있다.

5. 홈페이지 제작 검수 및 수정/보완 기간은 계약기간 외 별도 기간을 정하여 진행 한다.

제4조 (용역의 범위)

1. "을"이 "갑"에게 제공할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업무는 디자인, 코딩, 프로그래밍, 질의응답 등 그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로 한다.
2. 웹접근성 기반 홈페이지 제작이 아닌 일반 홈페이지 제작으로서 웹접근성 22개 항목의 일부 지침만 적용 한다.
3. 온라인 카드결제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승인은 개발범위 및 개발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을"의 웹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갑"은 제공된 웹호스팅 사양 이내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포털사이트 광고 및 이벤트 등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할 경우 "갑"은 "을"에게 최소 1주일 전 이벤트 정보를 공유하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치한다.)
5. 기타 자세한 계약 범위는 프로젝트 정의서에 준한다.

제5조 (산출물의 변경)

"갑"과 "을"은 용역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산출물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사전 합의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제6조의 지침에 따른다.

제6조 (용역의 수행방법 및 추가비용)

"을"은 용역의 착수 이전에 "갑"에게 구체적 수행계획을 공지하고, "갑"으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홈페이지는 "갑"이 제공한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된 별첨2의 정의서를 기준으로 제작한다. 단, 정의서의 내용이 변경될 시 "갑"은 반드시 "을"에게 변경사항을 공지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에 따라 변경여부를 결정한다. 변경 사항에 따라 추가 견적이 발생하면 본 계약과 별도로 청구한다.
2. 디자인 시안(전혀 다른 디자인으로의 변경)은 2차로 제한하고 이후 시안 제작은 횟수에 따라 을은 "갑"에게 시안 비를 청구할 수 있다. 하나의 디자인이 선택된 후, 디자인 수정은 5회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갑"과 "을"의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3. 메인/서브 디자인의 경우, 확정되어 소프트웨어 개발이 진행된 디자인은 변경할 수 없다. 이후 변경해야 하는 디자인의 경우 별도로 견적을 내어 진행하도록 한다.
4. 프로그램은 갑의 요청을 바탕으로 개발되며, 약정기간이 이내라 할지라도 개발이 완료된 프로그램 변경은 그 내용에 따라 추가 견적이 발생할 수 있다.
5. 각 페이지는 갑이 작성한 원고를 기준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작업 완료 후 갑의 확인 여부를 "완료 확인서"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확인한 일자, 담당자 성명 등)

6. 추가에 해당하는 작업이 완료된 후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갑"은 "을"에게 비용을 입금한다.

제7조 (용역의 대가)

1. "갑"은 제작에 앞서 계약금(작업착수금)으로 총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한다.
2. "갑"은 용역의 대가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대금을 상호간 납득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작업 완료 후 일주일 이내에 아래 계좌에 입금한다.

입금계좌: 국민은행 046801-04-173831 예금주: 디앤디

3. "을"은 "갑"에게 용역의 대가로 지불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제8조 (권리 및 의무)

1. 본 업무의 최종 확정 안에 대한 소유권은 "을"이 "갑"에게 양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상기 1항을 행함에 있어, "을"은 "갑"으로부터 제작비의 최종 잔금을 수령하는 즉시 "갑"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3. 약정기간 내에 계약해지로 인하여 진행이 중단될 시에는 실제 진행단계까지의 작업비가 지불되어야 한다.
4. 본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추가작업 또는 재 작업이 필요할 경우 "을"은 추가작업비 없이 재 작업하여 업무를 완료하며, "갑"의 이유로 인하여 원고 내용 또는 초기 결정된 진행사항 이외의 변동 및 추가 작업 또는 재 작업이 필요할 경우 "갑"은 "을"에게 추가작업비를 지급한다.
5. "갑"은 약정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테스트하여 오류를 최소화하고 사용법을 익혀야 할 의무가 있다. 약정 기간과 무상 하자보수 기간 이후에 요청되는 모든 하자보수 작업은 유지관리에 해당하여 작업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6. 제작 업무 종결 후 최종 결과물에 대한 대외적인 발표 시에는 항상 결과물에 대한 제작자로 "디앤디"를 명기한다

제9조 (자료제공 및 보관)

1. 제작에 필요한 콘텐츠 자료(이미지파일, 멀티미디어자료, 문서자료, 번역자료 등)는 "갑"이 "을"에게 제공하며 "을"은 "갑"의 양해 없이 제공된 자료를 "갑"이 의뢰한 홈페이지 제작 작업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2. "을"은 본 건 업무에 관해서 "갑"으로부터 제공된 제작 기획 아이디어, 서류, 도면, 정보, 데이터, 기타 모든 자료를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 관리하고 사전에 "갑"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복제

하거나 반출 혹은 본 건 이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산출물의 소유권과 저작권)

1. 본 건이 개발 완료되어 제작비가 완불되었을 때 제작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을"로부터 "갑"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하며, "갑"은 사용 권리를 갖는다.
2. 단, "갑"이 을에게 용역에 대한 대가 지불을 계약조건에 따라 완료되지 못한 때에는 산출물의 소유권은 "을"에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갑"은 산출물을 임의 복사, 판매해서는 안되며, "갑"의 임의 복사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다.
4. 작업 프로그램(포토샵, 플래쉬, 드림위버, 일러스트), 폰트, "을"이 사용한 이미지 원본 파일 등은 산출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을"은 디자인 작업원본 파일(psd,fla)을 잔금 입금 확인 후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달하며, "갑"은 사이트 수정, 보수 작업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6. 계약 체결 이후 홈페이지 디자인에 사용한 폰트 및 이미지의 저작권은 "을"의 책임하에 있다.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된 유료 이미지와 폰트는 국내 웹디자인 영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블로그포스팅 및 SNS 등에 사용이 불가하다. 홈페이지의 이미지를 다운 혹은 캡처 등으로 다른 영역에 사용할 경우 제기되는 문제는 "갑"의 책임하에 있다.
 - 국내 웹디자인 영역 : 홈페이지 (웹배너, 이벤트, 팝업, 모바일웹)
7. 그 외 "갑"의 요청으로 게시하는 콘텐츠 및 관리자와 사용자가 직접 게시하는 글과 이미지의 모든 저작권은 "갑"의 책임하에 있다.
8. 제작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기존의 콘텐츠의 글과 이미지의 모든 저작권은 "갑"의 책임하에 있다.

제11조 (하자보수)

1. 계약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갑"의 홈페이지 제작 완료 및 웹호스팅 셋팅 완료 후 1개월 간으로 한다.("을"이 제공하는 호스팅을 사용할 경우 이용기간 내 무상)
2. 하자보수 범위
 - a. 구축된 홈페이지에 대한 프로그램 오작동 및 "을"의 실수로 인한 오타 수정
 - b. 기타 하자보수 관련사항은 견적서 내용에 준한다
3. "갑"의 작업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무상 하자보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카드결제" 시스템에 대한 오류에 대한 책임은 하자보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5. "갑"이 홈페이지를 서버 사양 이상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서버 작업을 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무상 하자 보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2조 (기밀유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전달된 모든 정보는 계약체결 이전, 계약체결 이후 혹은 계약 의무가 완결된 이후에도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고, 본 계약의 목적 이외에는 계약 당사자의 사전 허락 없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갑"과 "을"은 홈페이지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할 의무가 있다. 본 조항의 위반 시 갑 과 을은 상대방에 대하여 서로 책임진다.

제13조 (중간 산출물에 대한 의무)

"을"은 "갑"의 만족스러운 홈페이지 제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하여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중간협의를 통한다. 중간협의를 진행과정에서 상호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할 의무가 있다.

제14조 (자료제공)

"갑"은 "을"의 원활한 홈페이지 제작을 위하여 을이 필요로 하는 제반 자료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 자료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은 차후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갑"이 제공하는 자료전달 및 컨펌 지연시 전체 제작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제15조 (용역의 중지)

1. 개발범위("프로젝트정의서") 이외의 사항을 추가비용 없이 "을"에게 요구하는 경우
2. "갑"이 시안 컨펌 지연 및 자료제공 지연으로 인해 작업일정이 변경 되었을 경우 완료일정 변경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3. 중도금 발생 시 입금되지 않은 경우
4. 용역범위 이외 범위를 무상으로 요청하는 경우
5. 디자인, 프로그램, 스토리보드에 대한 답변지연(답변요청일로부터 7일 이상), 자료요청일로부터 7일 이상 또는 기타 자료지원이 원활 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6. 메인/서브 디자인 시안을 컨펌을 하지 않는 경우
7. 본 조 1항,2항,3항,4항,5항,6항의 사유로 인하여 용역의 수행이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을 전체 용역의 수행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6조 (갑의 계약해지)

1. "갑"은 "을"이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을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산출물 제작에 대한 중간보고 및 결과보고 미 이행 시
 - 산출물 제작에 대한 작업 미 이행 시
 - 산출물에 대한 작업완료 미 이행 시
2. "갑"은 본 조 1항에 의거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을"이 이에 대한 적절한 회답이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을"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 (을의 계약해지)

1. "을"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갑"으로부터 특별한 해명 없이 지급 받지 못하였을 경우 최소 3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통보하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지급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의 해지를 "갑"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을"은 15조 전항 규정에 의해 "갑"의 귀책사유로 10일 이상 제작이 중지된 경우(단, 중지 사유 및 중지 기간에 대해 상호 협의된 경우는 제외)와 용역의 대가를 "갑"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최소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통보하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의 해지를 "갑"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해지의 효과)

1. "갑"과 "을"은 상호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이 해지통지를 서면으로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단, "갑"과 "을"이 서로 합의한 경우는 합의한 연장기간 이후 그 효력을 갖는다.
2.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본 계약은 해지 즉시 그 이후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이미 발생한 "갑"과 "을"의 계약 상의 권리, 의무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와 스스로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 본 계약과 관련된 내용 및 자료를 갑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갑"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을"의 대체수단을 찾아야 한다. "을"은 이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홈페이지 내 제작, 설치의 지연으로 인한 갑의 손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4.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와 스스로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 본 계약과 관련된 내용 및 자료를 "갑"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갑"은 계약 해지일까지 발생한 용역의 대가를 계약한 년도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4항 '소프트 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제19조 (지체보상금)

1. "을"의 고의 또는 사고에 의하여 납기일을 지체하였을 경우 "갑"은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5/1,000 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대금 지급 시 공제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 물품 및 용 역의 통합발주 SW사업 지체상금을 근거)
2.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의 경우, "갑"의 요청에 의하거나 문서에 의한 승인을 얻었을 경우, "갑"과 "을" 이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상호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0조 (계약의 양도 및 변경)

1.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동의 및 합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2. 본 계약 조건의 변경은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 될 수 있다.

제21조 (관할 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어야 하는 경우 소송제기를 제기한 측의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2조 (기타사항)

본 계약의 해석을 통해 이의를 발생시킨 사항이나 본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 반 상 관례에 준한다